

수시공시 대상 및 내용(제5-10조의2 관련)

1. 보험업감독규정 제7-44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사항

가. 보험업법시행령 제6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 사항

- (1) 보험업법 제123조 제2항·제131조제1항·제134조 및 금융산업의구조 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·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경우
- (2) 보험약관 및 사업방법서,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, 공시이율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(다만, 회사 홈페이지에 해당 변경내용을 즉시 공시한 경우는 제외)

나. 보험업감독규정 제7-43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

- (1) 보험계약의 해약 채도 등으로 인해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보험금 지급준비자산의 부족, 대외차입금의 상환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
- (2) 휴업·영업의 중지·보험계약인출 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

2. 보험업감독규정 제7-44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

가.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(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경우 회사별)에 대하여 보험회사의 직전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5%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(다만, 그 금액이 2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)

나.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금액(피해예상금액기준)이 3억원 이상인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
다. 보험회사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

재 지급여력금액의 1%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(다만,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)

라. 파생상품거래로 인하여 계약건당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금액의 1%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(평가손실을 포함하며 위험회피 대상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제외한다)이 발생한 경우(다만, 그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제외)

3. 보험업감독규정 제7-44조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항

가.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

- (1) 증자, 주식의 소각 또는 자사주 매입의 결정
- (2) 신종자본증권, 후순위채무,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에 관한 결정(외국에서 이와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가 발행되는 경우를 포함)
- (3)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에 관한 결정
- (4) 자기자본의 50%(단, 자기자본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억원) 이상의 단기차입에 관한 결정
- (5) 사모방식을 통한 자기자본의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) 이상의 단기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

나. 보험회사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

- (1) 자기자본의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)이상의 벌금, 과태료 또는 추징금 등 부과
- (2) 다음의 소송이 제기되거나 그 소송의 확정
 - 소송물가액이 자기자본의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) 이상인 손해배상의 청구(다만, 2.다.에서 정한 사항으로 이미 공시한 경우에는 제외)
 -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및 임원의 선임·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신청 등 법인의 경영사항과 관련된 분쟁

(3)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의 변경 및 자회사의 추가 및 제외에 관한 결정

(4) 사업목적의 변경에 관한 결정

다. 재산 등에 대규모변동을 초래하는 사항

천재·지변·전시·사변·화재 및 기타의 재해로 인하여 최근사업연도 자산 총액의 5% 이상의 손해 발생

라.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

자기자본의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)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에 해산사유 등 발생

마.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

(1) 최근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%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

(2) 자기자본의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) 이상의 타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에 관한 결정

바. 손익구조변경에 관한 사항

(1) 최근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등이 직전사업연도대비 30% 이상 증가 또는 감소

(2) 자기자본의 10%(단, 자기자본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) 이상의 특별손실 또는 특별이익 발생

사. 기타 보험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
(1) 현금배당(중간배당 포함)에 관한 결정

(2) 사외이사 및 감사(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)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

- (3)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부여를 취소하기로 결정
- (4) 금융지주회사법 및 상법규정에 의한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결정
- (5) 영업양도·양수·임대, 합병, 분할 등의 사실에 관한 결정
- (6)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위법행위가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
- (7)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은 때
- (8) 감독규정 제7-16조에 따라 경영개선계획, 약정서 또는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때